

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용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99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0일

발 의 자: 김용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영철,
김용일, 김원중, 김원태,
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상혁, 박 석, 박성연,
박영한, 박춘선, 박칠성,
박환희, 소영철, 신복자,
유만희, 윤기섭, 윤종복,
이상욱, 이종태, 이효원,
임춘대, 최민규, 최유희,
허 훈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36명)

1. 제안이유

-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특별회계 설치 존속기한인 5년 이내로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, 상위법 인용 조항 등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잠실상수원”을 “이 조례는 잠실상수원”으로 한다”로 개정함.(안 제 1조)
- 나. “ 수도법 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제7조·제78조”를 “ 수도법 제 7조·제78조”로 상위법 인용 문구 개정함.(안 제2조제1호)
- 다. 상위법인 “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”에서 정의하는 “수질개선사업”에 대한 인용 조항을 명확히 함.(안 제 2조제2호)

- 라.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을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연장함.(안 제3조의2)
- 마. 제4조제1항에서 불필요한 항 구분을 삭제하여 제4조로 개정함.(안 제4조)
- 바.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의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시·도 보조금은 제외함.(안 제4조제1호)
- 사. “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”을 약칭인 “한강수계법”로 개정함.(안 제4조제3호 및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잠실상수원”을 “이 조례는 잠실상수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수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7조·제78조”를 “「수도법」 제7조·제78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수질개선사업”이란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한강수계법”이라 한다)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.

제3조의2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국가 또는 시·도”를 “국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한강수계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
제5조 중 “법 제17조제2항 및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”를 “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<u>잠실상수원</u> 수질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<u>이 조례는 잠실상수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상수원”이란 「수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7조·제78조 및 「수도법 시행령」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잠실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·공고한 지역을 말한다.</p> <p>2. “수질개선사업”이란 법 제13조제1항 및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2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「수도법」 제7조·제78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“수질개선사업”이란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한강수계법”이라 한다)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상의 수질개선사업을 말한다.</p>
<p>제3조의2(존속기한)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/p>	<p>제3조의2(존속기한) ----- --- 2028년 12월 31일----- -.</p>

제4조(세입)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 또는 시·도의 보조금
2. (생략)
3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4. 5. (생략)

제5조(세출) 회계의 세출은 법 제17조제2항 및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.

제4조(세입) -----
-----.

1. 국가-----
2. (현행과 같음)
3. 한강수계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4. 5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세출) ----- 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-----

-----.